

제 6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6.1 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 나.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양 당사국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함을 보장하는 것
- 다. 양 당사국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를 규정하는 것
- 라.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 마.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과 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하는 것

제 6.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 6.3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양국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6.4 조

동등성

수출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수입 당사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수출 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수입 당사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목적을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에게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를 위한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제 6.5 조

위험평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5조를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위험평가 요청을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6.6 조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용

1.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

2. 자국 영역 내의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출 당사국은 그러한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임을, 그리고 계속하여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될 것임을 각각 수입 당사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 목적을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에게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를 위한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3.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 내린 결정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당사국은 시의 적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 6.7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제고하는 것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

다.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협력 및 협의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라. 양 당사국간 무역을 촉진하는 것

3.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해결은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의존해야 하고, 양자간 기술 협력 및 협의를 통해 최적으로 달성되어짐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 간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상,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을 점검한다.

나. 무역에 적용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해 투명성을 추구한다.

다. 양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적용과 관련된 기술 협력 활동의 조정을 증진한다.

마.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규제 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개선한다.

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검토한다.

사. 국제 기준, 지침 및 권고의 적용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문제를 다룬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다음 날부터 합리적인 기한 내에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채택한다.

5. 위원회는 다음 기관에 의해 조정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통상관광부 또는 그 승계기관

6.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연락을 촉진하기 위해 이 협정의

발효 후 제5항에 언급된 양국 각각의 조정자들의 상세 연락처를 교환할 것이다.

7.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년에 1회 회합한다. 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회합할 수 있다.

제 6.8 조 분쟁해결

어느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23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6.9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가의 정의가 적용된다.